

박주연

인간과 비(非)인간 동물은 늘 함께 살아왔다. 나름 수평적이고 균형적이던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점차 인간이 가장 우월한 생물종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직적, 지배적인 관계로 바뀌어 갔다. 20세기경 과학의 발달로 동물 역시 지능, 감정을 갖고 개체 간 소통과 협업하며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속시켰다.

주요 논의 내용

- 동물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변화들
- 우리나라 동물권 논의와 동물법의 현주소
-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생하기 위한 방향

유네스코(세계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는 UN의 기구)의 1978년 ‘세계 동물권리 선언’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고, 모든 동물은 ‘살아갈 권리’, ‘고통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특히 반려동물은 ‘인간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야생동물은 ‘서식지에서 생존, 번식할 권리’를, 실험/축산/사육동물은 ‘휴식할 권리’ 등을 갖는다.

1979년경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에게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본래의 습성에 따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일명 ‘동물의 5대 자유’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3조)와 같이 많은 나라의 동물법상 기본 원칙이 되었다.

권리, 자유, 이익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지만 결국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한 생래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동물에게는 살아갈 권리 즉 생존할 권리, 학대받거나 고통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적 권리와는 구별된다.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렇지만 동물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에서 섬세하게 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동물이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별 주체라는 사실,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 인지, 감각하고 인간에게 없는 능력까지 갖고 있기도 하며, 감정을 느끼고 다른 개체와 관계 맺는다는 사실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있다.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인식과 동물에 대한 종 차별, 심지어 같은 종의 동물 내에서도 차별이 이어지는 모습(예: 특정 품종견과 진돗개에 대한 차별, 품종묘와 길고양이에 대한 차별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이유 없는 차별, 편 가르기, 멸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는 일보다 ‘이윤의 극대화’가 더 중시되는 사회,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용인, 방관되는 사회에서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생명 존중, 다양성의 존중, 권리의 확장, 약자 보호,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 인간의 건강과 안전, 우리 사회의 보호 가치 설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과 모든 생물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이다.

박주연

사법연수생 시절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동물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변호사들의 공익 단체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동료들과 동물권 소송, 입법 제안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강의』 등을 썼다. 반려견 고미, 래미의 집사다.

이처럼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나 대립 관계가 아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인간에게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동물을 이용, 착취하는 ‘현실’이 인간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설령 인간에게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에 동물을 ‘어떻게 이용해도 좋을’(마음대로 가두거나 때리고 고통을 주고 죽일)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일까?

인간에게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령 인간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무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의 동물 이용, 권리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동물 이용은 중단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덜 이용하고 고통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이용’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기준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떠한 권리를 제한할 때 네 가지 요건, 즉 그 목적이 정당한지, 방법이 적합한지, 최소한도로 침해하는지, 침해되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동물을 둘러싼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가 계기가 되어 1991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명목적, 형식적으로 제정되어서 전체 조항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많이 부실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동물 반려인구가 크게 늘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성장해 왔다. 동물보호법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며 현재 101개 조항에 이르게 되었고 내용에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동물의 법적 지위는 아직 유체물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도 인간을 위한 수단이나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동물들은 번식장, 펫숍, 보호소에서, 동물원, 축제, 전시/체험 공간에서, 농장과 실험실에서 끔찍한 고통을 시달린다. 법은 여전히 동물을 보호하기에 부족하고, 학대를 예방하기도 어렵다. 동물을 구해내더라도 구조한 동물이 머무를 보호시설이 없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잘 단속, 적용되지도 않는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경각심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볍고, 동물이 소송에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했다.

우선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법은 동물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에 맞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히고 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소유권 제한, 몰수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안락사, 동물실험, 동물 생산/판매/전시 영업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동물은 종별, 개체별로 다르며, 각자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음을 인식, 연구하고 이를 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수록 좋다.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동물원법 등에 최소한 ‘종별 복지 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영업자에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동물보호’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구체적인 동물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도 필요하다.

법적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동물의 권리 보호를 사회의 주요 가치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사회 인식이다.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문제를 알리는 것, 동물을 ‘구입’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 동물을 착취한 제품/식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발의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게시하는 것, 동물권에 대한 기사나 책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 보는 것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물을 위한 정의』를 쓴 윤리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말처럼, ‘좋은 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 동물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희망의 이유』에서 말했듯, ‘우리들 각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  
2024년 6월 10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